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6. 송재봉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 8.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17.) 상정 · 제안설
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봉의원)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11조의2 제1항). 그리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1조의2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개정안에 따라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그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물품(비상벨 등)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의료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 11조의2제3항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실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또는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21조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 및 이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라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또는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원이의원, 송재봉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